

윤활소식

—환경처장관경질—

정부는 6월25일자로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을 비롯하여 4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을 경질하였다.

이번 단행된 인사에서 환경처 장관에는 이재창 전경기도지사를 임명하였으며, 이재창 환경처장관은 환경청장을 역임한바 있다.

한편 정부는 6월29일 이진차관의 사료를 수리하고 후임에 김인호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을 임명하였다.

—협회·회장단이사·감사 개선—

협회는 6월3일 총회를 갖고 6월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감사, 회장을 선임하였다.

유한교회장의 후임으로 모빌코리아윤활유(주) 박병구사장이 선임되었으며 새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박병구(모빌코리아 윤활유(주) 대표이사)

상근부회장/조병용

이사/김찬욱(이수화학공업(주) 대표이사)

〃 /유한교(한국셀석유(주) 대표이사)

〃 /안명주((주)유공 대표이사)

〃 /권오영(호남정유(주) 이사)

〃 /서보열(제일유화(주) 대표이사)

〃 /강영구(한불윤활유(주) 대표이사)

〃 /김재수(경인에너지(주) 이사)

〃 /이완주(쌍용정유(주) 이사)

감사/최천행(삼성정유(주) 대표이사)

〃 /강란희(중일화학(주) 전무이사)

—협회·구신회장단 이취임 및 창립10주년 기념식—

협회는 구·신회장의 이취임식과 협회창립 10주년 기념식을 협회회의실에서 간소하게 가졌다.

기념식을 회원사만이 참석한 간소한 대내행사로만 치루게 된 것은 국가경제와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한 근검절약의 뜻에서였다.

—(주)유공·윤활유판매점 사장단 울산견학—

(주)유공 윤활유영업부에서는 5월 21일, 22일 양일간 전국 윤활유 판매점 1백여업체의 사장단을 대상으로 울산공장단지 견학을 실시하였다.

「슈퍼비스」등 신제품 시판과 때를 맞추어 실시된 이번행사로 신제품에 대한 지식전달과 소속감 고취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호남정유(주)·회사창립 25주년 기념행사—

호남정유주식회사(대표이사 구두회)는 지난 5월19일 창립25주년을 맞아 임직원 내빈등이

참석한 가운데 트윈타워 동판 지하강당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한편 동사는 기념축하리셉션을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세라돈 볼룸에서 개최했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판교수련소에서 창립기념체육대회를 가진바 있다.

—호남정유(주)·슈퍼다이나믹 캠페인 및 신제품 설명회 개최—

호남정유(주) 윤활유판매부는 4월21일 부터 5월14일 까지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를 순회하며 부판점, 주유소, 운수, 건설업체등의 윤활유 관계자들을 위한 신제품 설명회를 열고 사은품을 증정했다.

—석유제품값 인상·전유종 평균 13.4%—

정부는 6월25일 0시를 기하여 전유종을 소비자가격기준 13.4% 인상하였다.

유종별소비자가격을 보면 ▲휘발유는 ㄷ당 497원에서 6백10원으로 ▲등유는 ㄷ당 216원에서 254원 ▲경유는 ㄷ당 182원에서 214원 ▲병커C유는 ㄷ당 저유황이 92.24원에서 102.26원 고유황이 79.96원에서 86.65원으로 ▲LPG(프로판)가 kg당 438원에서 460원으로 조정되었다.

정부는 이번 유가인상은 최근 국제 유가 및 환율의 상승추세를 감안, 에너지소비를 억제하면서 정유사의 손실 보조금과

운할소식

석탄산업지원자금을 충당하는 선에서 조정되었다고 한다.

유종별 소비자 값은 다음과 같다.

- 휘발유 1ℓ 610원
- 등유 1ℓ 254원
- 경유 1ℓ 214원
- 병커C유 1ℓ 102.26원(저유황)
1ℓ 86.65원(고유황)
- LPG 1kg 460원

—한국 석유품질검사소 인사 단행—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이사장 강증모)는 지난 5월7일자로 부·지소장급 인사를 단행하였다.

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획실장 禹桂命 △감사실장 洪仁植 △검사부장 張永植 △부산지소장 權寧佶 △광주지소장 姜昌俊 △대전지소장 李天浩

운할학회소식

한국운할학회(회장 안명주)는 지난 6월25,26일 양일간 제15회 학술강연회 및 공장견학회를 성대히 마쳤다.

이번 행사에는 118명의 업계 연구소 학계의 운할관련 종사자가 참여하였고 공장견학은 울산 소재 이수화학공장을 견학하고 울산소재 올림피아호텔강연장에서 5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알 림

석유사업법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 동시행규칙 제1조에 의하면 1일 생산능력이 2천바렐 이상의 아스팔트나 운할유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그

이하의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 제9조에는 석유정제업을 승계한 경우 1월이내에 승계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는 석유정제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상호·공장소재지·영업소소재지 또는 생산능력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동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외에도 석유정제업자로서 이행하여야 할 의무규정이 있으나 그간 이부분에 대하여 등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과중한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니 이점 명심하여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석유정제업자		석유판매업자		석유 수출업자
		허가대상인 석유정제업	신고대상인 석유정제업	허가대상인 석유판매업	신고대상인 석유판매업	
1.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한 때	법 제19조	3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 동력자원부장관이 명한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3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주요 석유소비자는 이에 준함)	1천만원	2천만원

유희소식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석유정제업자		석유판매업자		석유 수출업자
		허가대상인 석유정제업	신고대상인 석유정제업	허가대상인 석유판매업	신고대상인 석유판매업	
3.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1월이내에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법 제9조제3항 및 제12조 제4항	1천만원	600만원	600만원	300만원	
4.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의 수입·생산 및 판매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법 제10조	1천만원				
5. 석유수출업자가 석유수출입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법 제11조제3항					1천만원
6.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사업의 휴·폐지 및 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법 제14조	1천만원	600만원	600만원	300만원	600만원

에너지 절약 10%

에너지 절약 10%

에너지 절약 10%